

## 교원 외부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

2018.01.01.제정      2018.07.01.일부개정      2018.12.11.일부개정      2019.04.05.일부개정  
 2020.06.15.일부개정      2021.09.01.일부개정      2023.09.01.일부개정

<교무팀>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3조에 의거, 동명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외부겸직에 대한 허가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겸직”이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이 타 기관에 임용된 경우를 말한다.
- ② “영리업무”란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 1. 상업·공업·금융업·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2. 상업·공업·금융업·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 3.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정기적으로 보수를 수취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됨. 다만, 교통비, 회의수당 등의 실비만을 지급받은 경우는 영리업무에서 제외

제3조 (겸직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타 기관의 비상근직을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 2.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겸직(개정 2018.12.11.)
- 3. (삭제)(2018.12.11.)

제4조 (겸직허가 절차) ① 겸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겸직시작 희망일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외부기관의 겸직관련 공개모집에 지원을 할 경우 지원과 동시에 겸직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1.)

- ② 겸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을 작성,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소속 학장에게 제출한다.
- ③ 학장은 교원에 대한 겸직기관에서의 근무형태, 직책, 겸직기간, 보수의 지급여부 등을 확인하고, 교원 본연의 직무에 지장이 없는지 판단한 후 **교무처** 교무팀으로 겸직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와 겸직허가 동의서(별지 제2호)를 제출한다. (**개정** 2018.7.1., **2023.9.1.**)
- ④ 총장은 겸직허가의 필요성,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겸직 기간 등에 대해 검토한 후,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을 허가한다. 단, 교원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어려울 경우 추인을 조건으로 하여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 ⑤ 교원이 타 대학교 정규 수업을 위해 정기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다.
- ⑥ 교원이 산학협력활동을 위해 산업자문을 하는 경우는 산학협력단의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르며, 지침을 준수한 자문 활동은 겸직 허가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 (검직허가기준 등) ①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본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교원으로 1인당 1개 기관을 검직할 수 있다. 단, 무보수 비상근으로 비영리기관에 종사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9.1.)

②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검직하는 교원은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지급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발급받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12.11.)

제6조 (타 대학교 출강허가) ① 교원이 타 대학교의 정규 수업을 위해 정기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사전에 출강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② 타 대학교 출강은 「수업및학사사운영규정」 제23조 제1항의 내용을 준수하고, 주당 1과목(3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본교 교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개정 2019.4.5., 2020.6.15.)

③ 타 대학교에 출강하고자 하는 교원은 소정의 ‘출(수)강 허가신청서’ 및 출강요청기관 공문을 소속 학과(부)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한다.(개정 2018.7.1., 2023.9.1.)

④ 총장은 출강의 필요성, 교원 본연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출강을 허가한다.

제7조 (검직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직을 허가하지 않는다.

1. (삭제)(2018.12.11.)
2.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본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교원의 직무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5. 검직요청기관에서의 직무가 국가 혹은 본교의 이익에 상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당해학기 책임시수 부족 및 책임일수 미달 교원
7. 「수업평가규정」 제8조제5항에 적용된 교원(개정 2018.12.11.)
8.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제8조 (허가의 취소) ① 교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근무형태, 직책, 검직기간, 보수의 지급여부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거나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검직 허가기간 중이라도 제7조 각 호의 검직 금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교원은 해당 사유가 생기게 된 즉시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즉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8.7.1. 2018.12.11., 2023.9.1.)

제9조 (직무상 책임) 검직기관에서의 직무수행에 대하여는 본교의 복무로 보지 않는다.

제10조 (세부사항)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허가에 따른다.

제11조 (타법과의 관계) 이 세칙에 의하여 검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요구되는 외부강의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시행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교원 겸직허가 지침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의 제5조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9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개정 2019.4.5.)

### 검 직 허 가 신 청 서

|  |               |  |                                  |       |  |
|--|---------------|--|----------------------------------|-------|--|
| 신청인  | 소속            | 대학   |                                  | 학부(과) |  |
|  | 직급            |  | 성명                               |       |  |
| 검 직 기 관  | 기관명           |  |                                  |       |  |
|  | 소재지           |  |                                  |       |  |
|  | 영리 여부         | <input type="checkbox"/> 비영리기관( )          | <input type="checkbox"/> 영리기관( ) |       |  |
|  | 문의처           |  |                                  |       |  |
| 검 직 내 용  | 직위            |  |                                  |       |  |
|  | 상근 여부         | <input type="checkbox"/> 상근( )             | <input type="checkbox"/> 비상근( )  |       |  |
|  | 근무 부서         |  |                                  |       |  |
|  | 보수            | <input type="checkbox"/> 유급( ) - 총 원(월, 연) |                                  |       |  |
|  |               | <input type="checkbox"/> 무급( )             |                                  |       |  |
|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p>※ 관련 근거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br/>                 2.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br/>                 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br/>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br/>                 5.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5조<br/>                 6. 교원인사규정 제3조<br/>                 7. 교직원복무규정 제4조</p> <p>상기 근거에 의하여 위 본인은 검직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며, 검직허가 후에도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여 학생의 교육, 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서약합니다.</p> <p>붙임 1. 해당 기관 관련 공문 1부.<br/>                 2. 사업자등록증 각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인)</p> |               |  |                                  |       |  |

<별지 제2호> (개정 2019.4.5.)

## 검 직 허 가 동 의 서

|     |    |    |    |  |       |
|-----|----|----|----|--|-------|
| 신청자 | 소속 | 대학 |    |  | 학부(과) |
|     | 직급 |    | 성명 |  |       |

  

|                        |       |  |          |   |  |
|------------------------|-------|--|----------|---|--|
| 검 직<br>기 관<br>및<br>내 용 | 기관명   |  |          |   |  |
|                        | 소재지   |  |          |   |  |
|                        | 영리 여부 | <input type="checkbox"/> 비영리기관( )  |          | <input type="checkbox"/> 영리기관( )                                  |  |
|                        | 직위    |  | 상근<br>여부 | <input type="checkbox"/> 상근( )<br><input type="checkbox"/> 비상근( ) |  |
|                        | 보수    | <input type="checkbox"/> 유급( ) - 총 원(월, 연)<br><input type="checkbox"/> 무급( ) |          |   |  |
|                        |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상기 교원의 검직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학부(과)장 : (서명/인)

학장 : (서명/인)